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 2025년 1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0.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5. 1. 1.
2. 202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 가. 지적측량
-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605,000	620,000	635,000
	T / S	1 점		1,091,000	1,120,000	1,154,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4,000	106,000	131,000
	T / S	배 각 법	1 점	112,000	115,000	138,000
		방위각법	1 점	102,000	104,000	130,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00,001원 8,530,000원	8,530,001원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5,000	237,000	279,000	363,000	418,000	446,000	47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5,000	297,000	350,000	455,000	525,000	560,000	59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9,000	229,000	270,000	351,000	405,000	432,000	459,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9,000	363,000	427,000	555,000	640,000	683,000	726,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2,000	451,000	531,000	690,000	796,000	850,000	903,000
	수치	1필지	300	257,000	312,000	367,000	477,000	550,000	587,000	624,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6,000	213,000	251,000	326,000	376,000	402,000	42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0,000	268,000	315,000	409,000	472,000	504,000	53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9,000	206,000	242,000	315,000	363,000	387,000	411,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9,000	363,000	427,000	555,000	640,000	683,000	726,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2,000	451,000	531,000	690,000	796,000	850,000	903,000
	수치	1필지	300	257,000	312,000	367,000	477,000	550,000	587,000	624,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26,000	600,000	673,000
		임야	1 필지	5,000	534,000	711,000	797,000
	수 치		1 필지	1,500	407,000	574,000	649,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509,000	718,000	812,000
	수 치		1 필지	1,500	528,000	744,000	837,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7,000	518,000	584,000
		임야	1 필지	5,000	460,000	611,000	683,000
	수 치		1 필지	1,500	390,000	555,000	623,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57,000	342,000	385,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26,000	404,000	451,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지구계·지구내		1점		74,000	95,000	110,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69,000	78,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5,000	78,000	8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2,000	82,000	88,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2,000	66,000	72,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5,000	85,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6,000	73,000	81,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98.4	919.5	994.9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3.9	75.8	77.9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76.2	385.2	397.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3.9	75.6	7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승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단,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5,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며,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8,000	398,000	450,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5,000	108,000	111,000
		임야		105,000	108,000	111,000
	수 치			74,000	77,000	78,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m ²	508.1	520.8	535.4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m ²	72.7	74.4	76.8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m²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m²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m²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36,000	345,000	355,000
	지적도근점	1점	16,000	16,000	16,000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30,000	45,000	50,000
	임야		42,000	54,000	58,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 산 화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216,000	222,000	229,000
		임 야			238,000	243,000	250,000
측량결과도 전 산 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6,000	47,000	48,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개별지적(전산) 자료정비	토 지·수 치		1필지	필지	27,000	27,000	28,000
	임 야				35,000	36,000	37,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0,000	10,000	10,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7,000	17,000	18,000
		임 야			18,000	18,000	19,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35,000	138,000	141,000
		임 야			170,000	172,000	178,000
	수 치				93,000	95,000	98,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 면 작 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 서 작 성	전 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목재, 철못1호, 2호, 3호)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http://seereal.lh.or.kr>)
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